
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

< 지원 상세 내용 >

2023. 1.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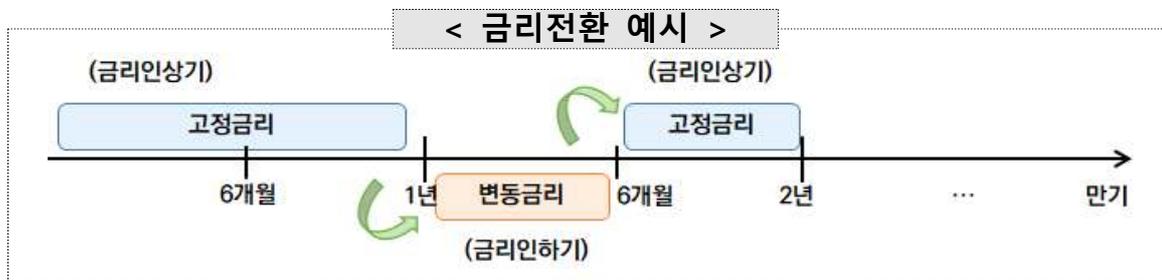
1. 3고 현상에 대응	1
① 고금리 대응	1
② 고물가 대응	2
③ 고환율 대응 및 수출 지원	4
2. 혁신기업 성장지원	5
① 신산업 육성	5
② 창업·벤처기업 육성	9
③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	14
3. 취약기업 재기지원	17
① 신속금융지원 효과성 제고	18
②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	19
③ 소규모 기업 지원	21
4. 지원 인프라 개선	22

1 3高 현상에 대응

1 고금리 대응

1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6.0조원 (산은, 기은)

- 변동금리 수준까지 인하된(최대 $\Delta 1.0\%p$) 고정금리를 적용
- 향후 금리상황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횡수제한 없이 변동 \leftrightarrow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



2 금융비용경감 특별대출 0.2조원 (기은·신보)^{신규}

- '21.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보증부 우대금리 대출로 지원
- 보증비율 95%, 보증료 $\Delta 0.2\%p$ 감면,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5\%p$

3 법인 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0.5조원 (기은·신보·기보)^{신규}

- 매출감소 법인소기업^{신·기보}, '22년 이후 신설법인^{신·기보}, 연매출 1억 이하 법인소기업^{기보}에 운전자금을 보증부 우대자금*으로 공급

* 보증료 $\Delta 0.3\%p$ 감면,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

4 보증 6.78조원 (지신보)

- 고금리 등으로 일시적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자금 지원

⑤ 중신용자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1조원 (지신보)^{신규}

- 금리인상 등 3고 위기로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등급* 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

*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(신용평점 710~839점) 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, 최대 3천만원 지원

- 보증료 0.5%* 적용, 금리감면 약 $\Delta 1\%p$

* 중신용자 보증부대출 시 평균 보증료율은 0.8%

⑥ 유동화회사보증 0.9조원 (신보, 기보, 중진공)

-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을 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

② 고물가 대응

① 상생경영 우수기업 특별지원자금 1.0조원 (산은)^{신규}

-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*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

* ① 협력기업과 하도급대금·납품대금 계약에 부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(공정위) 또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(중기부)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계약을 체결
②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(공정위) 또는 납품대금 연동 시범운영(중기부) 선정기업

- 금리감면 (대기업 최대 $\Delta 0.3\%p$, 중견·중소기업 최대 $\Delta 0.7\%p$)

② 원자재가격 상승, 인건비 부담 등에 대응

1) 중소중견 재무안정 프로그램 1.0조원 (산은)

- 재무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시설·운전자금을 우대금리*로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

2) 원자재 위기극복 대출 0.3조원 (기은·신보·기보)

-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수출입·협력기업, 매출액 대비 재료비 또는 수입금액 비중 20%이상 기업에 우대보증부 대출*로 운전자금 공급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, 보증비율 90%, 보증료 $\Delta 0.3\%p$ 감면

3) 3중고 극복 지원대출 0.3조원 (기은)

-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 60%이상, 수출입 실적 10만불 이상 또는 물류비 상승, 고용인원 유지·증가기업에 우대조건*의 운전자금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5\%p$, 여신한도 우대

4) 경영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0.5조원 (기은) ^{신규}

- 매출액 감소 또는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우대금리*로 시설·운전자금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

5) 고용우수기업 우대 프로그램 0.6조원 (기은)

-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시 차감된 선순위 임금채권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신용대출로 운전자금 지원

6) 중장기 금리안정 대출 0.5조원 (기은) ^{신규}

- 장기 프로젝트 수주,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에 민감한 기업에 우대금리 장기대출*로 운전자금 공급

* ① 조달금리 3년물과 1·2년물간 차이 자동감면 + ② 최대 $\Delta 1.0\%p$ 의 추가감면

-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추후 비용부담 없이 他 단기대출로 전환 가능

< 조달금리차 감면 등 상품예시 >

조달금리차 감면 (자동)	$\Delta 0.44\%p$	$\Delta 0.09\%p$	$\Delta 1.00\%p$
기타우대 감면		$\Delta 1.00\%p$	
적용금리	5.57%	5.92%	6.01%
	1년차	2년차	3년차

7)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보증 1.3조원 (신보) ^{신규}

-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우대보증*으로 운영자금 지원

* 보증비율 90%, 보증료 $\Delta 0.3\%p$ 감면

8) 중기업 전용 유동성지원 보증 0.5조원 (신보)^{신규}

- 3高 등 복합위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유동성애로를 겪는 중기업에 우대보증*으로 운전자금 공급

* 보증비율 최대 90%, 보증료 최대 $\Delta 0.2\%p$ 감면

9) 소부장특례보증 0.27조원 (기보)
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선정 우수기업(강소기업100+, 스타트업100, 으뜸기업) 및 소부장 분야 R&D 추진기업 등 우대지원*

* 강소기업100+ 스타트업100, 으뜸기업 선정기업은 30억원까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0.4%p 감면 적용

10) 긴급경영안정자금 0.26조원 (중진공)

- 원자재 가격 상승,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*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** 대상으로 운전자금 공급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+0.5%p (한도) 10억원 (상환기간) 5년

** (금리) 1.9% 고정 (한도) 10억원 (상환기간) 5년

3] 고회율 대응 및 수출지원

1 환헤지 비용 절감 (수은, 기은)

- 대출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*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선택권 부여한 시설·운전자금 대출 공급

* 원화, 달러화, 엔화, 유로화

- 신용공여한도 외 선물환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인하*

* (1개월물) 3.2% → 1.6%, (2개월물) 4.7% → 2.4%, (3개월물) 5.7% → 2.9%

2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 (기은)

- 담보금 적립 면제(現 20%), 만기연장 주기 연장(1개월 → 최대 6개월)

- 환율상승에 따른 결제자금 부족* 시에도 만기연장을 허용

* 그 동안 수입품 선적 문제, 매출채권 현금화 등과 무관한 결제자금 부족은 만기연장 불허

③ 수출기업 우대자금 지원

1) 무역협회 이차보전 협약대출 0.1조원 (기은)^{신규}

- '22년 수출실적 1천만\$ 이하인 중소기업에 수출이행(생산, 원자재 구매 등) 또는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*로 공급

* 최대 $\Delta 2.7\%p$

2) 수출중소기업보증 0.45조원 (기보)

- 수출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부터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수출기업 우대보증* 지원

* 보증료 최대 0.4%p 감면, 보증비율 최대 95% 적용, 신용도 검토 완화 등

3)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.36조원 (중진공)

- 수출 10만불 미만* 수출초보기업에 고정금리 선택제를 도입하고, 수출 10만불 이상** 중소기업에는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^{신규}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가산금리 없는 고정금리 (한도) 5억원 (상환기간) 5년

**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최대 3%p 이차보전 지원

2 혁신기업 성장지원

① 신산업 육성

- ① 혁신성장공동기준,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신산업 등 미래혁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1) 미래핵심산업 육성대출 1.0조원 (산은)^{신규}

- 혁신성장공동기준 또는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상 신산업 영위기업에 우대금리*로 시설·운전자금 대출 및 전환사채발행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0.6\%p$

2)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대출 4.0조원 (기은)

-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산업 영위를 위한 시설·운전자금을 우대조건*으로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, 여신한도 우대

3) 시설운전자금 패키지 투자 활성화 보증 1.2조원 (신보)^{신규}

-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대보증*을 통해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*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 최대 $\Delta 0.5\%p$ 감면

4) 미래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보증 1.0조원 (신보)^{신규}

- 혁신성장공동기준 영위 기업에 우대보증*을 통해 시설·운전자금 지원

* (특별출연협약)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 $\Delta 0.2\%p$ 감면
(보증료지원협약) 보증료 최대 $\Delta 0.5\%p$ 감면

5) 초격차·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 1.7조원 (기보)

- 첨단제조, 에너지, 디지털·통신, 자동화, 바이오 관련 10대 초격차분야 및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* 우대지원**

*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친환경에너지, 로봇, 빅데이터·AI, 사이버보안·네트워크, 우주항공·해양, 양자기술 등 10대 초격차분야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

** 보증료 $\Delta 0.2\%p$ 감면 및 보증비율 최대 95%, 운전자금 산정 한도 최대 130% 등

6) R&D보증 0.9조원 (기보)

- 기업 자체 R&D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정부 R&D성공과제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우대*보증

* 보증비율 최대 100% 및 보증료 $\Delta 0.3\%p$ 감면 우대

7) 혁신성장지원자금 0.925조원 (중진공)^{신규}

-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중진공이 시설·운전자금을 공급하고, 시중은행 대출의 이차보전을 지원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+0.5%p (한도) 6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5년

**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최대 3%p 이차보전 지원

8)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.3조원 (중진공)

-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, 특허, 정부 인증기술 등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한도) 3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5년

② 사업전환·재편 승인, 국내복귀 및 스마트化 추진 기업 등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운전·시설자금 지원

1)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1.0조원 (산은)^{신규}

- 정부승인 사업재편기업, 고부가가치 퍼플오션(신사업분야) 진출을 위한 M&A, 영업양수도 자금을 우대금리*로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△1.0%p

2) 턱업기업 지원자금대출 1.0조원 (기은)^{신규}

- 신사업 진출기업, 국내복귀(리쇼어링) 추진기업 등에 우대금리*로 시설·운전자금 지원

* 금리감면 최대 △1.0%p (리쇼어링 기업은 최대 △1.3%p 감면)

3)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0.3조원 (신보)^{신규}

- 정부승인 사업재편 기업,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재편 기업(창업 5년 초과)에 우대보증*으로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* 보증비율 최대 95%, 보증료 최대 △0.5%p 감면

4) 스마트제조서비스보증 0.4조원 (기보)

-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공급기업과 비제조 서비스 분야에서 첨단 ICT를 활용 서비스 스마트화 추진기업 우대지원*

* 스마트 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감면 최대 0.5%p까지 차등운용

5) 사업전환자금 0.25조원 (중진공)

-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한도) 10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6년

6)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0.615조원 (중진공) **신규**

-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 자동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시운전자금을 공급하고, 시중은행 대출의 이차보전을 지원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한도) 100억원(운전 10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5년

**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최대 3%p 이차보전 지원

7) (가칭) 미래차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(중진공) **신규**

-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, 미래차 등 혁신분야 전환 중소기업에 컨설팅·자금·R&D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

- 대기업과 협업하여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(3년간 150개사)

< 현대차 공동 "(가칭)미래차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" 지원체계(안) >

주체	수요발굴	컨설팅	사업전환	후속지원
정부	•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 기업 등	<경영 컨설팅> • 사업전환 컨설팅	사업전환 계획승인	• 사업전환 자금, R&D, 직무전환 등
현대차	※ 산업동향, 투자전략 등 정보공유 행사 개최	<기술 컨설팅> • R&D 역량 분석 • 개발방향 컨설팅	-	• 시제품 제작·개발 교육 • 제품 로드맵 구축

8) 스마트·혁신성장 특례보증 0.3조원 (지신보)

- 스마트 기술 이용, 보유중인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영위, 고용유지·창출 사업자 특례보증 지원*(1.3조원, 23년 1분기 예정)

* 지원규모 확대 : (현행) 1조원 → (변경) 1.3조원

③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ESG 추진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로 운전·시설자금 지원

1)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대출 1.5조원 (기은)

- 저탄소 녹색산업 영위·전환,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ESG 실천 중소기업에 우대조건*으로 시설·운전(시설운영 필요)자금 공급

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3\%p$, 여신한도 우대

2) Net-Zero 유망기업지원자금 0.125조원 (중진공)^{신규}

- 그린기술 사업화, 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시운전자금을 공급*하고, 시중은행 대출의 이차보전을 지원**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+0.5%p (한도) 6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5년

**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최대 3% 이차보전 지원

② 창업·벤처기업 육성

① 투자위축에 대응하여 창업기업에 우대지원

1) 혁신창업대출 0.5조원 (기은·신보)

- 기은(IBK창공)·신보(Nest)의 창업지원센터 선발기업, 혁신성장 공동기준영위 기업 등에 운전자금을 우대조건*으로 공급

*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 $\Delta 0.4\%p$ 감면,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3\%p$

2) 청년창업보증 0.5조원 (기보)

- 만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정부 등 창업지원 사업으로 우수성과가 확인된 '우수청년기업'은 추가 우대*

* (한도) 6억원 (보증비율) 100% (보증료) 고정 0.3% (산정특례) 2억원

3) 창업기반지원자금 1.93조원 (중진공)

-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·운전자금* 공급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-0.3%p (한도) 6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 운전 5년

- 창업기업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*하는 프로그램도 도입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한도) 1억원
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*을 별도 운영(0.25조원)

* (금리) 2.5%(고정) (한도) 1억원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6년

②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 공급

1) 스케일업 200 프로젝트 1.0조원 (신보)

-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 200개社를 발굴하여 운전자금을 우대조건*으로 지원

*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한도 최대 150억원, 고정 보증료 0.5%

- 전담조직을 통한 컨설팅, 홍보, 민간 투자유치 등도 지원

2) 스케일업보증 0.3조원 (기보) ^{신규}

- 초격차·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*로 최대 100억원 우대** 지원

* 창업초기(창업 5년 이내) 최대 70억원, 성장·도약(창업 후 5년 초과 등) 최대 100억원

** 보증비율 95%, 보증료 연 0.5%p 감면

③ 투자유치 후 다음 단계 투자유치 전까지의 데스벨리 극복에 필요한 자금공급

1) 벤처대출 0.1조원 (기은) ^{신규}

- 우수 VC·AC가 투자한 기술관련 유망 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뱅크식 대출 지원
- 일반대출(정상금리)에 신주인수권부사채(금리 0%)를 혼합하여, 금리인하 효과
- 투자유치금액에 비례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고, 후속투자유치를 감안한 장기대출 제공 (2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
※ (참고) 적용사례

□ (기본가정) '20년 창업한 A기업은 스타트업투자 3억원을 받은 후 후속투자 유치 지연 → 기업은행에서 벤처대출을 통해 3억원 조달

① (대출구조) 일반대출 1.5억원(금리 8%), 신주인수권부사채 1.5억원(금리 0%)

② (최초투자 유치시 기업가치) 40억원

③ (후속투자 유치시 기업가치) 80억원

□ (대출실행) A기업은 3억원을 시장조건인 8%보다 저렴한 4% 금리로 6년간 조달 → 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인 1.5억원의 워런트 확보

□ (기업은행 워런트 행사) 기업가치 80억원으로 후속투자 유치 성공 → 기업은행은 워런트 행사로 3억원 상당의 A기업의 신주를 1.5억원에 인수

2) 투자연계보증 0.35조원 (기보)

- AC,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스케일업(scale-up)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*

* 엔젤(벤처)투자연계보증, VC투자매칭 특별보증,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

**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 연 0.8~1.0% 고정

④ 혁신성장펀드 조성 15.0조원^{신규}

[혁신성장펀드]

□ 年 3,000억 재정*을 투입하여 매년 3조원 조성(재정출자비율 10%)
⇒ 5년간('23~'27년) 총 15조원 규모

* 뉴딜펀드: 재정출자비율 15%, 年 6,000억원 재정 투입→4조원 조성

□ ①혁신산업: 신산업·전략산업 등 시장보완에 집중,
②성장지원: 산업제한 없이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

※ 국정과제 31. 재정 및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혁신스케일업 펀드를 신규 조성

□ 경쟁 공모를 통해 모펀드 운용사 선정, 세부 투자대상 선정시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

○ 투자기준 마련 등에 민간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

□ '23년 국회 예산확정(12월) → 혁신성장펀드 세부 운영계획 발표 및 운용사 선정공고(12월)

< 혁신성장펀드 조성분야 비교 >

	혁신산업	성장지원
조성규모	5년간('23~'27) 7.5조원(年 1.5조원)	5년간('23~'27) 7.5조원(年 1.5조원)
예산	年 2,000억	年 1,000억
재정비율	재정비율 13.3%	재정비율 6.6%
투자대상	반도체, AI, 항공·우주 등 신산업·전략산업분야 중소·벤처기업	중소·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
투자범위 및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섹터펀드(특정 산업 지원) 성장단계~성숙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투자규모 다양(소규모~대규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케일업펀드(산업분야 무관) 성장단계 → 성숙단계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 대규모 Growth Capital 공급

⑤ 모태펀드 조성 10조원

[모태펀드 출자]

-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매년 약 2조원 펀드 조성 추진 → 5년간('23~'27년) 총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
- ('23년 주요 출자분야) 중기부(초격차, 글로벌, 시장과소, 중간회수), 문체부(K-콘텐츠, 스포츠), 환경부(미래환경), 과기부(우주신산업) 등
 -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초격차펀드(신규), 스케일업·중견도약펀드 조성
 -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
 - 시장과소투자 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, 여성, 창업초기, 재도약, 지역혁신 분야 전용펀드 조성
 -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&A, 일반세컨더리, LP지분 유동화,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조성
 - 영화·콘텐츠 및 스포츠 산업, 미래환경 산업 육성과 우주신산업 분야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 조성
- (VC 투자촉진)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, 신주투자 인센티브 등을 '23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전면 적용
 - 투자목표비율* 이상 투자 시, 관리보수 추가 지급, 성과보수 지급 우대,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
 - * 기준 투자목표비율(%) : (결성일로부터 만 1년) 40 → (~만 2년) 70 → (~만 3년) 90
 - 손실 발생 시, 민간출자자에 우선하여 모태펀드가 손실을 충당하는 비율 상향(모태펀드 출자금 10% → 15%)
 -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관리보수를 받도록 지급기준을 개선
- ('23년 출자계획) 1차 정시(중기부, 문체부 : '23.1월), 2차 정시(중기부, 문체부, 환경부, 과기부 등 전부처 : '23.2월)

③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 (산은, 기은, 신보)

① 신용등급·담보가 아닌 성장가능성을 기반으로 성장유망분야에
우대자금을 공급

1) 신성장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1.0조원 (산은)^{신규}

- 매출 증가, 영업이익 시현이 지연*되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에
대한 시설·운전(시설운영 필요)자금 우대금리** 대출

* (매출지연) 에너지, 환경·지속가능, 전기전자 / (수익지연) 센서측정, 지식서비스

** 금리감면 최대 △0.7%p, 산업한도 예외 적용

2) 성장유망·스케일업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3.8조원 (기은)

- 혁신성·성장가능성을 평가*하여 전액 신용대출로 우대조건**의
운전자금 공급

*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거나 미래전망이 우수한 업종, 기술력이 우수,
대표자의 신용도가 우량, 신용위험지표*에 未해당, 미래 추정 영업이익까지 고려한
채무부담능력이 우수, 재무제표 비중을 낮추고 최근 금융거래 또는 4대 보험
납입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등급이 우수 등

※ 신용위험지표 : 신용등급2등급 하락, 매출30% 감소, 이자보상배율 1미만, 차입금의존도
70% 이상, 최근 3개월 내 5일 이상 계속 연체

** 금리감면 최대 △1.8~3.0%p, 신용대출한도 우대(최대 10억~15억)

3) 투자브릿지 보증 400억원 (신보)^{신규}

-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에 재무적 성과가 아닌 투자유치금액에
따라 보증한도가 산정되는 우대보증* 제공

* 보증비율 최대 100%, 고정 보증료 0.7%

< 투자유치 단계별 보증한도 >

	투자시드	투자매칭	투자스케일업
요건	• Seed 투자유치 성공		• 시리즈A 투자유치 성공
보증한도	• 소요자금 이내 (업체당 1억원)	• 투자유치금액×2 (업체당 5억원)	• 투자유치금액 (업체당 20억원)

② 상거래 활동 기반으로 자금공급

1) 상거래신용지수 우대보증 0.3조원 (신보)

- 적시성 있는 동태정보를 반영*하여 상거래가 활발한 중소기업 (한국형 paydex 5등급 이상)에 우대보증 공급

* 상거래채권 결제기간, 고용, 부가세 등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의 평가모형의 보완지표

2) 매출채권 팩토링 1,375억원 (신보, 기보, 중진공)

-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*으로 매입하여 우대조건**으로 조기현금화 지원

* 통상 금융기관의 매출채권할인은 구매기업이 채권결제를 못한 경우에 판매기업에 상환조건을 부여

** 매출채권 할인을 최대 감면 : 신보 $\Delta 0.5\%p$ 기보 $\Delta 0.3\%p$ 중진공 $\Delta 0.5\%p$

3) 매출채권보험 (신보)

- '23년 보험 인수규모를 '22년 대비 2천억원 확대한 21.2조원으로 하되, 3고 위기 심화 시, 최대 1조원(21.2조원의 5%) 추가 인수

- 중소, 벤처, 외감기업 등 기업규모별 지원 강화

①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협약보험 규모를 확대('22년 8.5조원 → '23년 9.2조원)하고, 기초지자체도 참여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을 인하(30~50% → 10~40% 수준)

② 유망 벤처기업에게 보험료 인하, 한도상향 등을 지원하는 특별보험 3천억원 시범 도입

③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외감기업의 경우 보험 한도를 확대 (100억원 → 200억원)

-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은행을 8개 이상으로 확대*하고, 홍보활동도 강화

* 하나, 신한, 국민, 기업, 부산, 경남 + 대구, 전북 등

③ IP금융

1) 소액IP 특별보증 500억원 (신보)

- IP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자동 IP가치 산출모형을 적용하여 소액 IP(3억원 이하)에 우대보증*으로 운전자금 제공

* 보증비율 최대 100%, 고정 보증료 0.7%, 평가비용 면제

2) 지식재산 우대보증 500억원 (신보)

- 보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우대보증*으로 운전자금 지원

* 보증비율 최대 95%, 보증한도 최대 10억원, 보증료 최대 $\Delta 0.2\%p$ 감면

3) IP사업화 자금대출 0.1조원 (기은)

-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*를 받은 우수 IP보유 중소기업에 우대금리** 대출로 운전자금 지원

*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500만원은 기은과 특허청이 각각 50%씩 부담

**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0\%p$

4) IP보증 0.6조원 (기보)

- 지식재산(IP)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, SW 저작권, 반도체 배치설계* 등 중점 분야 IP 보증 강화

* 팹리스기업 배치설계권 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여 '23년부터 IP보증 공급 본격 추진

3 취약기업 재기지원

[신용위험평가와 재기지원]

□ 기촉법·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*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

* (정기평가)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(수시평가)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또는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 기업 중 요청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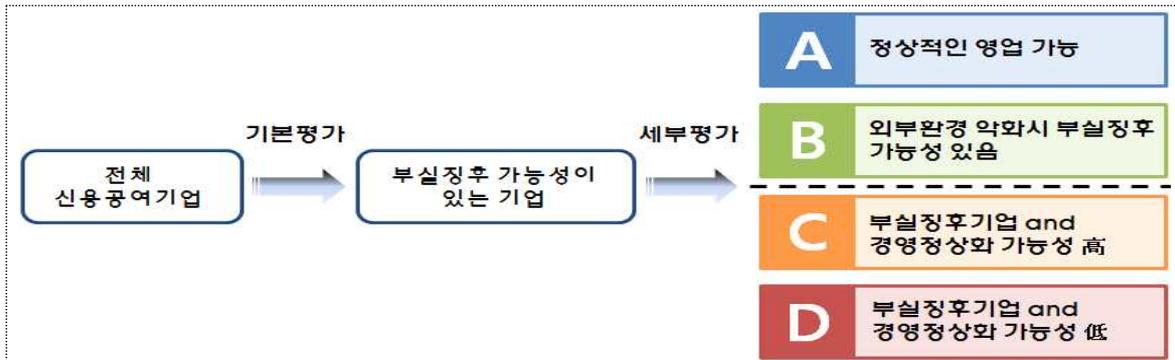
□ 기본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분류하고,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4단계로 분류

○ (기본평가) 재무·정량 지표를 평가*하여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

*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이자보상배율 1.0미만, 부(-)의 자본총계 등

○ (세부평가) 기본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은행별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5대 위험요소* 분석 후 최종등급을 산정

* ① 산업위험, ② 영업위험, ③ 경영위험, ④ 재무위험, ⑤ 현금흐름



□ (사후 조치)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금융지원·워크아웃·기업 회생 등 채무조정 및 경영정상화 등 지원

구 분	정상기업		부실징후기업	
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신용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구조조정	-	신속 금융지원	워크아웃(기촉법) 회생절차(통합도산법) 등	회생절차 (통합도산법)

1 신속금융지원제도 효과성 제고

1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확대

-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 없는 신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
- 채권금융회사 단독지원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채무기업에도 신속금융지원*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

* 현재 일부은행이 단독 신속금융지원을 정형화(내규반영)된 제도로 운영 중

※ (참고) 은행별 단독 신속금융지원 운영사례 예시

- OO은행 Pre-Fast Track 프로그램 :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(i)일부상환 없는 전액 만기연장 (ii)분할상환대출 (iii)금리감면(최대 $\Delta 2\%$) 등 지원
- △△은행 기업성공 프로그램 :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, 금리우대, 경영컨설팅, 신규자금 등 지원

< 신속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제도적 공백 보완 >

신용공여액	신용위험등급	다중채무 기업	단일채무 기업
10억원 이상	B	신속금융지원	단독 신속금융지원
	C	워크아웃	워크아웃
10억원 미만	신용위험평가 면제	신속금융지원	단독 신속금융지원

2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일몰기한* 없이 상시화하고,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전적 구조조정의 효과성을 제고

* ('08~'17년)1년 단위 연장, ('17~'21년)일몰기간 5년 규정 ('22년)6월 단위 연장

- 신속금융지원 대상에 신·기보 보증기한 연장도 포함
- 지원 종료 시, 잔여채권 상환일정·방법 등을 기업의 상환능력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부담 집중을 완화
- 만기(보증기한) 연장, 이자감면 등에도 취급자 면책을 적용
- 일시적 유동성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제한대상*을 마련

* 완전 자본잠식, 감사의견 부적정·의견거절 2년연속 한정, 지원종결 후 1년 이내 등

②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

① 신속금융지원 또는 워크아웃에 중진공의 지원을 연계

450억원 (중진공)

- 협약은행*은 신용위험평가 결과, **B등급**(신속금융지원 대상) 또는 **C등급**(워크아웃 대상)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, **경영정상화**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

* 국민, 우리, 신한, 농협, 기업, 수출입, 산업, 경남, 대구

- 중진공은 중진공에 대출잔액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되, 은행추천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가능성을 제고

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은행권 금융지원 외에 중진공에서 금융지원,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을 추가 제공

i) 중진공은 은행의 지원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과 금융지원*을 제공

* 지원여부 및 지원조건은 기업평가 후 결정

< 은행 금융지원 정도에 따른 중진공 지원수준 >

은행 금융지원*	중진공 금융지원			선정 가점
	신규대출	만기연장	금리인하	
만기연장, 금리인하	총한도 5억	택일**		0점
신규대출 1억원 미만	총한도 5억	택일**		2점
신규대출 1억원 이상	운전자금 한도 10억, 시설자금 한도 60억	가능	가능	3점

* 은행추천일 기준 최근 1년 ~향후 6개월 이내 기간

** 중진공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택일

ii)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, 계획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, 경영개선 계획 수립 자문도 병행(기업당 1,760만원 이내)

② 워크아웃, 회생 등 부실징후기업에 자금 지원 830억원 (캠코, 중진공)

- 경영정상화 가능성, 워크아웃 절차이행률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 대여

③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4조원

[기업구조혁신펀드]

-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하여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*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 → 시장 중심 구조조정

* (사전적 구조조정) 기업활력법 대상기업, 자본시장법상 재무안정PEF 대상기업 등
(사후적 구조조정) 회생,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

- 지분투자(PEF), 부채투자(PDF), 신생운용사 전용 루키리그 도입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식 적용

- '23년 1조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신규 조성(5년간 4조원)

* (운영현황) 그간 '1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펀드를 조성하여 '22.12월말 까지 총 4.9조원 조성, 95개 기업에 3.7조원 투자

- 신규 조성되는 모펀드 운용주체를 구조조정기업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캠코로 변경(기존 운용사 : 한국성장금융)

- 캠코가 운영중인 기업지원 프로그램*과 연계하여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제고

* 기업자산 매각지원(S&LB), 회생기업 신규자금 대출(DIP 금융) 등

-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개편* 등 추진

* (예시) 중소기업·회생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운용사 성과보수 또는 관리보수 상향

③ 소규모 기업 지원

① 힘내라 중소기업 재기지원 0.5조원 (기은)

-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총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상환 유예, 금리인하* 등 채무조정 지원

* 1년 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기업 : 한은 기준금리 적용 /
 3년 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기업 : 한은 기준금리+1~3%p 적용
 (총여신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적용 가능)

②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기지원

1) 부실채권 상각 2.169조원 (신보, 기보, 지신보, 중진공)

-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상각*

* (신보)1조원, (기보)4,500억원, (지신보)4,690억원, (중진공)2,500억원

- 상각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,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한적으로 최대 90%까지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

< 상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>

신보	기보	지신보	중진공
원금감면(40~90%) 손해금감면(8→0~2%) 분할상환(16년 내)	원금감면(40~90%) 손해금감면(8→2~5%) 분할상환(16년 내)	원금감면(40~90%) 손해금감면(8→0~5%) 분할상환(16년 내)	원금감면(70~90%) 분할상환(10년 내)

2) IBK재창업지원대출 0.1조원 (기은)

- 폐업했던 기업인의 재창업(재창업 후 5년 이내)을 위해 시설·운전자금을 우대금리* 대출로 공급

* 금리감면 최대 △1.2%p

3) 재기지원보증 350억원 (기보)

- 성실실패자 및 실패법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보증 대상을 확대*하여 지원**

* (기존) 실패한 경영자가 새로 창업한 기업만 지원 가능 →
 (확대) 실패한 경영자가 운영한 기존 기업도 지원 가능

** 채무조정 75~90% + 신규보증 지원

4) 재창업자금 750억원 (중진공)

- 재창업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시설·운전자금 공급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한도) 60억원(운전 5억원) (상환기간) 시설 10년, 운전 6년

-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($\Delta 0.3\%p$) 제공

5) 브릿지보증 0.35조원 (지신보)

- 폐업 후 재기를 위해 개인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고,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상환구조 도입

* 상환방식 : (현행) 매월 분할상환 → (변경) 거치기간 포함 및 일시상환 추가

** 보증비율 100%, 보증료 최대 0.9%, 금리 CD91일물 + 1.6% 이내

6) 재창업 특례보증 0.97조원 (지신보)

- 재창업 환경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 촉진을 위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, 보증한도도 상향

* 지원대상 확대(2020년 기준 삭제) 및 보증한도 상향(5천만원 → 1억원)

** 5천만원 이내, 보증비율 100%, 보증료 연 0.5%

7) 희망플러스특례보증 0.6조원 (지신보)

-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속 지원(3.8조원 중 3.2조원 지원, '22.11월말)

* 인터넷전문은행(K뱅크, 토스뱅크) 추가 ('22.12.19일 시행)

4 지원 인프라 개선

1] 고액지원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 구축 (중진공) ^{신규}

- 고액 대출기업 중 부실이 우려되는 저신용 기업*에 대해 현장 방문, 경영조사 등 특별 실태조사 매분기 실시

* 신용대출잔액 5억 이상 또는 직접대출 잔액 20억 이상 중 CR10~13등급 기업

- 매출 추이, 정상 가동 여부(휴·폐업, 가동률 등), 담보물 등을 점검하여 부실이 확인될 경우, 채무조정 또는 채권보전 조치 추진

② 정책자금희망기업 모두에 신청기회 부여 (중진공) **신규**

- 기존 선착순 방식(매월)을 희망기업 모두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 하되,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*

* (기존) 온라인 상담예약(선착순) → 상담 → 신청 → 평가 → 용자결정
(개편) 상담 신청(전수 접수) → **정책우선도평가** → 상담 → 신청 → 평가 → 용자결정

- 신산업 등 중점지원 분야, 고용창출, 기술·경영혁신, 수출실적 및 미래성장성 등을 시스템으로 자동 평가*

* 긴급경영안정자금, 재도약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의 경우 전수 상담 추진

- **매월 3주차**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*(2일 내)으로 운영

* 신청접수 수요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(접수 부족시 상시 접수)

③ 지역 중소기업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**신규**

-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·도(TP)로 확대 설치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지원 대상 확대*

* ('22) 비수도권 5개 → ('23) 비수도권 12개 → ('24) 전국 17개

- 모니터링 결과 심각단계로 결정된 지역은 **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**으로 연계 지정*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청 권고

* 지원내용 : 직접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, 법인세 또는 소득세 (50%, 5년간)등 국세·지방세 감면, R&D 지원(54억원), 자금 등 중기부 사업(44개) 우대 등

④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신속 집행 **신규**

- R&D 사업 신청 및 수행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 서류* 및 사업변경** 절차 간소화

* (현행)사업계획서 30~40p → (변경) 사업계획서 20p 이내(작성 항목 축소 등)

** (현행) 모든 항목 "사전승인" → (변경) 일부 항목(방법, 기간 등) "통보" 방식 전환

- 평가기간 축소, 이의신청 절차 일원화 등 선정기간 단축 (현행 12주 → 개선 8~9주*)으로 신속한 개발자금 지원

* 결격여부 확인(1주) → 서면 평가(3주) → 대면 평가(2주) → 이의신청 확인(2주)